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신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적정임금 결정 시에 학사의 경우도 터무니 없이 높게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i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의 필요성

▶ 1327호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조직적인 특징 때문에 유럽에서 몇가지 동물 실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염증 조직이 뼈에까지 번지나를 봤는데 치아 주위 조직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모두 살펴본 실험이었습니다.

치아 주위 조직은 앞선 언급한 섬유소의 부착으로 만들어진 방어선이 염증 조직을 방어선 상부에 주로 형성되고 뼈 바로 위 조직은 건강한 조직 밴드가 존재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그 방어선이 없다보니 플라그나 박테리아의 침입에 쉽게 무너져 염증 조직들이 뼈 부위까지 쉽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 플라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임플란트 주위 뼈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치과에서의 관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는 음식 섭취 후 몇 시간 만에 바로 형성되는 박테리아 덩어리 입니다. 치태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치솔질로 쉽게 제거가 되지만 제거 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치석이 됩니다.

이 치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음식물 섭취 후 불과 8시간이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잇몸 치료를 전담하다보니 “나는 정말 열심히 이를 닦는데 왜 잇몸이 이렇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닦으실 것입니다. 사



실 열심히 닦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구나 생각되어 이를 열심히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의 관리법은 치아의 관리법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이 있으시면 임플란트 관리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잇솔질법, 치실, 치간 칫솔, 등등 수많은 구강 위생품들의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이 방법을 임플란트 관리에 적용하시면 수십 년이 지나도 문제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시면, 아니 시술 중이라도 담당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으셔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술 받은 임플란트가 훗날 문제가 생길 소지를 낮추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